

MP3 음악파일

무단 복제 · 공유는 저작권 침해

글 | 김현_ 법무법인 세창 대표 hyunkim@sechanglaw.com



미 국 애플의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는 2001년 출시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전세계 총판매량 1억 개를 돌파하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 음악 시대에 일본 소니의 '워크맨'이 당시 1억 개 판매량을 달성하는데 1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디지털의 힘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 MP3 플레이어라는 음악 재생기는 LP나 CD처럼 유체 음원을 삽입하지 않고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명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반도체 메모리 기술인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메모리 기술 덕분에 우리는 명함보다도 작은 MP3 플레이어 하나로 수백곡의 음악을 자유롭게 듣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책을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여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된 'e-book' 까지 등장하였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 분쟁 확산

그런데 최근의 법조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메모리, 디지털 관련 기술 때문에 몹시 분주하다. 소송도 많고, 논쟁도 많다. 그렇다면 애플사나 삼성전자가 제품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정작 제품을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 있지 않다. 그럼 누가, 무슨 일로 디지털 음악 문제로 법원을 찾는 걸까? 바로 음반업계 사람들이 온라인 음악 저작권 문제에 찾는 것이다.



우리가 듣고 있는 MP3 음악은 인터넷을 통하여 그 파일을 전송 받아 플레이어의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이를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재생시켜 나오는 결과물이다. 과거에 불법 테이프와 CD를 복제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물량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확산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돈을 들여 CD를 구입하지 않고도 MP3 플레이어와 인터넷만 있으면 얼마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음원제작업자들과 가수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자 드디어 우리 사회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리바다 사건, 벅스뮤직 사건들이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관련 사례들이다. 이렇게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작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이 알려져 있을 뿐, 정작 실제로 문제되는 그 구체적인 세부개념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작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되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별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일일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권리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만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노래방기기를 만드는 제작업자로부터 수많은 노래들이 수록된 노래방 반주기기를 구입하여 노래방영업을 한 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노래방업자로서는 당연히, 노래방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음악사용 허락을 받아서 노래방기기에 음악을 넣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노래방업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아서 만든 노래방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단 복제도 아닌데, 왜 유죄가 선고되었을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의 세부 권리 개념을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음악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불법 복제를 당하지 않을 복제권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공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연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자는 복제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공연하는 노래

방업자는 별도로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노래방업자는 복제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이제 저작권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권리들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파일 공유는 복제권·전송권 침해

음악 저작권에 관하여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려진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음반제작자들의 동의 없이 CD로부터 음악파일을 추출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소리바다에 접속하여 이 파일들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 역시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들의 침해 여부가 각각 쟁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복제권과 전송권(컴퓨터 통신으로 음악을 송수신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배포권이라는 권리의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배포권은 무슨 내용이기애 침해가 아니라고 했을까. 배포라는 것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악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한 채로 소리바다에 접속한 것 자체만으로 양도나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풀이하자면 양도나 대여라는 것은 유체물의 형태로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전송이지 배포는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저작권의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의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그 발전 속도는 우리의 적응 속도를 뛰어 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활 속의 법률문제들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물론 음악 감상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왜 인터넷 음악 제공 사이트들과 음반제작업자들이 으르렁대는지, 곡당 500원씩 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더욱 더 풍족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S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과 코벨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개인, 과기부·건교부 법률고문,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